

## 각국 제안서에 따른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방안

이광남<sup>†</sup> · 서병귀<sup>\*</sup>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sup>†</sup> · 한국해양수산연수원<sup>\*</sup>)

## Proposal's analysis of major fishing countries and Countermeasures under WTO/DDA

*Kwang-Nam, LEE<sup>†</sup> · Byung-Kwi, SEO<sup>\*</sup>*

*<sup>†</sup> Korea Fisheries Association, Fisheries Policy Institution ·*

*<sup>\*</sup>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Received October 4, 2005 / Accepted October 25, 2005)*

### Abstract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started by DDA(Doha Development Agenda : 2001.11)at early 2002 has been held about 20 times until the first half of 2005.

The Negotiation will be terminated until the end of 2005 but now,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exact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 on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between FFG(Fish Friends Groups : USA, New Zealand etc) and Anti-FFG(Rep. Korea, Japan etc).

The Fisheries Subsidies is regulated by the WTO/DDA Negotiation that regulates on the subsidies of industri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forest products.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Guidelines for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were established in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t 2001 and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has been discussed from 2002 to 2004. After June, 2004, the Negotiation was proceeding as Rep. Korea, Japan and Taiwan agreed with discussing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nd At 1st, August, 2004, they reached an agreement on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t Feb, 2005, discussion was suspended because of presenting the joint proposal from 3 countries(Rep. Korea, Japan and Taiwan) and now discuss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is giving the first consideration to classification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fisheries, problems of farming, grace period etc.

From now on, Considering the 18th~the 20th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 of fisheries subsidies regulation including property and range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a definition of small fisheries is accelerated.

---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2-589-0627, lkn6530@chol.net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and arranged every country's proposals holding our own position and took a survey to fishermen and fisheries experts about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In addition,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the way of future-negotiation and provides essential data to help government's policy making through analyzing prohibited/ non-actionable subsidies, farming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scale fisheries.

*Key Words* : WTO/DDA, Fisheries Subsidies, FFG, Anti-FFG, Countermeasures.

## I. 서 론

WTO/DDA 수산보조금 논의는 2001년 11월 DDA(도아개발아젠다)에 의하여 2002년 초부터 시작하여 2005년 상반기에 까지 20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 협상의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2006년 말에 협상이 종결될 예정이며, 미국, 뉴질랜드 비롯한 FFG(Fish Friends Group)와 한국과 일본 등의 Anti-FFG간의 입장이 첨예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대만과 더불어 2005년 2월 WTO 보조금 회의(제17차)에서 일반적 허용 방식(Bottom-up Approach)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제18차-제20차('05.3, '05.5, '05.7)의 협상분위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수산보조금의 규제방안 뿐만 아니라 금지 및 허용 보조금의 성격과 범위, 개도국의 S&D, 소규모 영세어업의 정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국의 제안서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산보조금 금지를 주장하는 나라들의 수산보조금 유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top-down 및 bottom-up 방식 적용시 규제 및 비규제 보조금 목록을 파악하여 협상전략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WTO에서는 협상을 통해 수산보조금의 금지 및 허용범위를 결정하게 됨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각국의 제안서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규제 및 비규제 보조금 목록 검토, 최근의 쟁점사항 분석 등을 통하여 협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협상의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II. 각국의 제안서 분석

### 1. WTO/DDA 협상 전·후 논의 동향

#### 가. WTO/DDA 협상 이전

2001년 이전까지, 수년간 수산분야에서 보조금의 보존 및 무역의 영향에 관하여 WTO/CTE(세계무역기구/무역환경위원회), FAO(유엔세계식량기구), OECD/COFI(경제협력개발기구/수산위원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논의되어 왔다. 즉, WTO/무역환경위원회에서 1997년 5월 처음으로 수산보조금이 환경과 무역에 유해하다는 일련의 제안서가 제기된 후, 수산보조금의 정의, 분류, 자원의 훼손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었다.

#### 나. WTO/DDA 협상 이후

2002년도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5차례 WTO 규범회의가 있었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협상일정 및 범위, 제2차는 FFG의 8개국공동 제안서, 제3차에서는 중국, 일본, 뉴질랜드가 각각 제안서 제출, 제4차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별도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의가 있었다.

2003년도 협상은 6차례의 WTO 규범회의가 있

었으며, 제6차 회의에서는 일본과 FFG의 6개국 제안서, 제7차는 한국과 미국 제안서, 제8차에서는 EC, 일본, 중국, 한국 등이 4개국이 각각 제안서 제출, 제9차에서는 칠레 단독, 제10차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별도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의가 있었으며, 제11차에서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2004년도에는 6차례의 WTO 규범회의가 있었으며, 제12차 회의에서는 뉴질랜드, 제13차회의에서는 일본, 한국, 뉴질랜드, 제14차는 일본, 제15차는 FFG의 6개국, 제16차에서는 미국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총 6개국 7개 제안서가 제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 각국의 제안서 제출 현황

1999년부터 2001년 11월 WTO/DDA 협상 개시 이전까지 4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들 나라들은 뉴질랜드, 미국, 일본, 한국 등이다. 다음으로 WTO/DDA 협상 개시 이후인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동안 WTO/DDA 규범협상그룹 회의가 16차례 진행되는 동안 총 24건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표 1> 주요국의 수산보조금 관련 제안서 제출 현황(1999.1-2004.12)

국 가 명	제출 횟수	비 고
뉴질랜드*	7 건	공동제안서(3건) 포함
일 본*	7 건	단 독
미 국*	5 건	공동제안서(1건) 포함
한 국*	5 건	단 독
칠 레	3 건	공동제안서(2건) 포함
E C	3 건	단 독
아이슬란드	2 건	공동제안서(2건) 포함
아르헨티나	2 건	공동제안서(2건) 포함
중 국	2 건	단 독
필 리 핀	2 건	공동제안서(2건) 포함
캐 나 다	1 건	단 독
소수해양국	1 건	공동제안서(1건) 포함

WTO/DDA 협상이전인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각각 제안서 1건 제출국가임

2004년 12월까지, 뉴질랜드와 일본은 공동제안서를 포함하여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 미국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뉴질랜드, 미국, 칠레 등 수산보조금의 규율에 대하여 적극적인 국가와 한국과 일본 등 수산보조금에 대하여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방어하는 입장의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각국 제안서 분석

본 논문에서는 수산보조금의 금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FFG(Fish Friends Group)과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인 Anti-FFG(Anti Fish Friends Group),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 동안의 3년간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Fish Friends Groups(FFG)

FFG(Fish Friends Group)은 WTO 규범협상에서 회원국들의 발언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2003년 6월 협상에 제출된 칠레 제안서가 FFG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FFG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미국 등이 포함된다.

(1)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WTO/DDA 협상 이전인 1999년 6월에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제안서(W/121)를 제출하였고, 2004년말 까지 총 7건의 제안서(공동제안서 3건 포함)를 제출한바 있다.<sup>1)</sup> 대부분의 제안서에서 뉴질랜드는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체제의 부재 속에 이루어지는 남획과 정부 재정이전에 의해 부추겨지는 과잉어획능력에 기인하고 있고, 특히, 수산보조금은 무역, 개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동 문제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계속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 W/121('99.6.28), W/3('02.4.23), W/12('02.7.4), W/58('03.2.10), W/154('04.4.26), W/161('04.6.8), (W/166('04.11.2)

또한, 뉴질랜드는 SCM 협정이 시장왜곡을 주로 다루고 있고, 수산보조금이 무역, 환경,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된 WTO 규율이 필요하고, 수산보조금 지급국은 대부분 주요한 수산물 소비국으로 상계관세 적용이 곤란하며 실제로 상계관세가 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잡는데 활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산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Top-Down)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미 국

미국은 2004년말 까지 총 5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sup>2)</sup> 금지보조금과 병행 또는 별도로 해로운 보조금(Dark amber)을 신설하고 입증책임을 보조금 수여국에 부여 등 수산보조금에 대한 SCM협정상 보조금 통보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현행 SCM 규정이 무역왜곡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SA(Sectoral Approach)과 뉴질랜드와 같이 수산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Top-Down)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수산보조금에 대해 접근방법은 SA, 협상의 틀은 Top-Down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는 2004년 말까지 총 2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sup>3)</sup> SCM 협정은 시장왜곡을 주로 다루어 수산보조금이 무역, 환경,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수산물의 이질성과 보조금 확산은 현행 SCM 협정이 묘사하는 종류의 시장왜곡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SA(Sectoral Approach)과 무역왜곡 및 환경유해(수산자원 고갈)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개선된 WTO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칠레

2) W/154('00.7.4), W/3('02.4.23), W/21('02.10.15), W/77('03.3.19), W/169('04.12.13)

3) W/3('02.4.15), W/58('03.2.10)

2004년말 까지 총 3건의 제안서(공동제안서 2건 포함)를 제출한바 있으며,<sup>4)</sup> 현행 SCM 협정으로는 수산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왜곡 및 환경유해(수산자원 고갈)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 따라서, 개선된 WTO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산보조금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아르헨티나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적은 없으나 공동으로 2회에 걸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sup>5)</sup> 수산보조금 분류에 관한 APEC, OECD, 미국, FAO, UNEP의 선행연구 결과의 분류방식이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하며, 2004년 제안서에서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Top-Down)를 공동 제안하였다.

(6) 필리핀

공동으로 2회에 걸쳐 제안서를 제출한바 있으며,<sup>6)</sup> 현행 SCM 협정이 묘사하는 종류의 시장왜곡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SA(Sectoral Approach)과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왜곡 및 환경유해(수산자원 고갈)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개선된 WTO 규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2004년 공동제안서에서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Top-Down)를 제안한 바 있다.

나. Anti-Fish Friends Group(Anti-FFG)

(1) 일본

일본은 2004년 말까지 뉴질랜드와 더불어 7건의 제안서를 제출한바 있으며,<sup>7)</sup> 수산보조금은 SCM 협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할 사안이라고

4) W/3('02.4.15), W/58('03.2.10), W/115('03.6.10)

5) W/58('03.2.10), W/166('04.11.2)

6) W/3('02.4.15), W/166('04.11.2)

7) W/11('02.7.2), W/52('03.2.6), W/226('03.4.24), W/84('03.4.30), w/159('04.6.7), W/159('04.6.7), W/164('04.9.27)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논의에 반대하며 (General Approach), 수산보조금 분류작업이 부적절하고, 특히, FFG의 주장 주장과 반대로 별도의 논의에 반대하며(General Approach), 문제가 있는 수산보조금 위주로 규제(bottom-up approach)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 한국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4번에 걸쳐 제안서 제출하였다.<sup>8)</sup> 현행 SCM 제도상 문제로 FFG가 주장하는 sectoral approach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도하각료선언문에서 규범협상에 위임하고 있는 기본개념과 원칙이 유지되는 테두리 내에서 수산보조금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새로운 규범은 보조금의 성격 외에도 어업관리, 자원상태, 사회적 영향, 소규모어업과 대규모어업의 차이 등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FFG의 주장 주장과 반대로 별도의 논의(sectoral approach)에 반대하며(General Approach), 문제가 있는 수산보조금 위주로 규제(bottom-up approach) 규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 기타국

(1) EC와 캐나다

2003년 들어 캐나다와 EC는<sup>9)</sup>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입장을 전환하였는데, 2002년 말 개최된 일부 국가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캐나다는 자국의 제안서(TN/RL/W/1)에서 제기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General Approach)은 캐나다의 선호(preference)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그 동안 한국 및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EC와 캐나다

가 입장을 전환함에 따라 향후 논의방향은 Anti-FFG가 불리해질 가능성 큰 것으로 관측된다.

(2) 중국

중국은 2004년 말 기준 단독으로 2번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sup>10)</sup> 보조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 필요하며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를 하는 보조금은 허용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되 개발도상국에 대한 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대우와 허용보조금의 신설, 보조금 통보의 강화, 및 보조금 규제에 있어 양식어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 주장하였다.

(3) 약소연안국

소수 해양국가들은 약소연안국(Small Vulnerable Coastal States)에 있어서 수산업은 중요한 산업이므로 S&D 차원에서 수산보조금은 ASCM상 보조금의 정의에서 제외시키고, 생계유지형어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sup>11)</sup>, 수산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업관리측면에서 WTO보다는 FAO에서 동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각국 제안서상 수산보조금 분류

FFG(Fish Friends Group)인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미국 등은 협상의 틀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는 Top-down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지범위를 제안한 나라들 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과잉설비/남획을 직접 야기 시키는 보조금을, 칠레는 수산업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Red light와 Amber Category로 구분)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지보조금 중에서 과

8) W/17('02.10.2), W/69('03.3.18), W/97('03.5.5), W/160('04.6.8)

9) W/30('02.11.21), W/82('03.4.23)

10) W/9('02.6.20), W/88('03.5.1)

11) W/136('03.7.21)

각국 제안서에 따른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방

잉어획능력보조, 과잉어획 및 기타무역왜곡을 야기하는 보조금, Dark Amber Category를 통한 금지보조금규정, 어선헌외이전지원, 어선구입지원, 어선 현대화 지원, 생산요소경비지원, 수산물가공 및 유통관련세제혜택, 금융혜택 등이다.

수산보조금의 허용범위에 대해 어선감척사업, 해외입어료지원, 자원관리, 사회간접 자본시설, 전직훈련지원, 자원증강사업, R&D 및 친환경어구

개발, 경제적 충격적응 지원, Red light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WTO에 통보되고 승인되어야하며 타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함), 자원평가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산업관련 사회보장 프로그램지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Anti-FFG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대만 등은 협상의 틀로 Bottom-Up 방식을,

<표 2> WTO/DDA 수산보조금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비교표

	한국 (TN/RL/W/164)	일본 (TN/RL/W/159)	EC (TN/RL/W/82)	FFG (TN/RL/W/166)	미국 (TN/RL/W/169)	브라질 (TN/RL/GEN56)
<b>협상</b>	Bottom-up	Bottom-up	중립	Top-down	Top-down	Top-down
<b>금지범위</b>	원칙허용 예외금지	원칙허용 예외금지	중립	원칙적금지 (수산업에 혜택(benefit)을 주는 보조금)	원칙적금지(과잉 설비/어획을 직접 야기하는 보조금)	원칙적금지(수산업 에 이익(interest)을 주는 보조금)
<b>세부 목록</b>	어선건조지원	어선건조지원	어선건조지원	-	-	어획능력증강지원
	어선현대화지원	IUU어업지원	어선헌외이전지원	-	-	IUU어업지원
	어선조선소지원	-	해외합작지원	-	-	수산물공급지원
	어선헌외이전지원	-	-	-	-	-
	어선구입세제지원	-	-	-	-	-
	해외입어료지원	-	-	-	-	-
<b>허용 범위</b>	일반적허용	일반적허용	중립	예외적허용	예외적허용	예외적허용
<b>세부 목록</b>	어선감척사업	어선감척사업	어획능력감축지 원	어선감척사업	어선감척사업	지속가능 수산업 지원
	자원증강사업	자원조성사업	안전성향상	해외입어료지원	자원증강사업	소규모또는 전통적어업지원
	자원관리사업	R&D	제품품질 및 작업환경개선	자원관리	자원관리	어획능력감축지원
	R&D 및 친환경어구개발	-	친환경어구도입 을 위한 어선현대화	사회간접자본 시설	R&D 및 친환경어구개발	어업인재훈련 및 조기퇴직
	전직지원조기퇴직 지원	-	어업인재훈련 및 조기퇴직	전직훈련지원	경제적 충격적응 지원	-
	휴어보상	-	휴어보상	-	-	-
<b>개도 국 S&amp;D</b>	인정	인정하나, 확일적 적용은 반대(중국고려)	특별입장 표명 없음(최근에는 인정하는 입장)	인정	인정	광범위한 인정(어선건조 및 현대화 등)
<b>비협 상 대 상</b>	기반시설	지역사회안정화사업 (인적지원개발 재해구난구조조정 등)기반시설	-	-	-	-
<b>기타</b>	소규모영세어업지 원허용	-	단기간의 유예기간 필요인정	-	허용보조금 입증책임:보조금 지급국가	금지에외:재해구 난,구조조정
	-	-	-	-	신축성확보방안으 로서 유예기간허용	유예기간 인정:3년/5년/7년

수산보조금에 대한 금지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금지 인정 주장하고 있다.

EC는 형상의 틀과 보조금의 금지범위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금지보조금으로는 어선 건조지원, 어선해외이전지원, 해외합작지원, 위장보조금, 수출금융(export financing), 대체 및 어획능력 증강보조금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지보조금으로는 어획능력감축지원, 안전성 향상, 제품품질 및 작업환경개선, 친환경어구도입을 위한 어선현대화, 어업인재훈련 및 조기퇴직, 일시적 조업중단 지원 등. 특히,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WTO에 통보 의무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협상의 틀로 Bottom-Up 방식을, 보조금의 금지범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허용보조금으로는 기반시설구축보조, 질병예방 및 통계보조, 과학연구 및 훈련보조, 어업인의 전직보조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양식업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수 해양국들은 수산보조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EEZ내 생계형어업보조, 생계유지형어업 지원보조 등은 허용하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Ⅲ. 수산보조금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현황 및 분석 방법

##### 가. 설문조사 현황

어업인과 전문가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지 회수 결과는 총 874부를 발송하여 22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약 25%로 나타났다. 회수되어 분석 대상이 된 설문지 총 221부 중에서 전문가 28%(62부), 어업인 72%(159부)로 어업인들의 비중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2)</sup>

##### 나. 분석방법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업인 그룹,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보조금 유형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카이제곱(X<sup>2</sup>-Test) 검정을 통해 그룹간 인식도 차이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 다. 분석모형 : 카이제곱(X<sup>2</sup>-Test)검정

설문지 분석에 그룹간의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카이제곱(X<sup>2</sup>-Test) 검정은 명목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 여부에 관한 검정을 행

<표 3> 설문조사 응답자 세부 현황

어업인 집단			전문가 집단		
분 류	인원(명)	비중(%)	분 류	인원(명)	비중(%)
연근해어업	80	50.3	해양수산공무원	51	82.2
원양어업	7	4.4	교수/연구원	4	6.5
양식업	10	6.3	기타	3	4.8
수산가공	5	3.1	무응답	4	6.5
무역	1	0.6	소계	62	100.0
수산물유통	2	1.3			
어획물운반업	1	0.6			
어촌계원/종사자	9	5.7			
수협임직원	22	13.8			
기타	5	3.1			
무응답	17	10.7			
소계	159	100.0			

비고 : 총 응답자 221명  
 ※ 회수율 : 25%(874부 발송)

하는 통계기법이다.

카이제곱(X<sup>2</sup>-Test) 검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범주형 변수일 때 검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관찰된 관찰도수와 이론적 빈도인 기대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카이제곱(X<sup>2</sup>-Test)검정은 적합도 검정(test of goodness and fitness) 또는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지를 보기 때문에 독립성검정(test of independence)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를 선호색상(검은색, 흰색)이라하고 독립변수를 성별(남자, 여자)라 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을 정리할 수 있다.

<표 4> 선호색상에 대한 관측 및 기대도수

		선호색상		계
		검은색	흰색	
성별	남자	a	b	a+b
	여자	c	d	c+d
계		a+c	b+d	a+b+c+d

\* a,b,c,d : 관측도수

\* E<sub>a</sub> : a의 기대도수 = (a+b)(a+c)/(a+b+c+d)

\* E<sub>b</sub> : b의 기대도수 = (a+b)(c+d)/(a+b+c+d)

\* E<sub>c</sub> : c의 기대도수 = (c+d)(a+c)/(a+b+c+d)

\* E<sub>d</sub> : d의 기대도수 = (c+d)(b+d)/(a+b+c+d)

기대도수인 E<sub>a</sub>, E<sub>b</sub>, E<sub>c</sub>, E<sub>d</sub> 가 5보다 커야하며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항목의 수는 최소한 전체 항목의 25%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카이제곱(X<sup>2</sup>-Test) 검정의 기본조건이다.

라. 가설 설정

카이제곱(X<sup>2</sup>-Test) 검정을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서 설정하였다.

12) 원양어업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인원이 7명(4.4%)으로 연근해어업의 설문응답자(80명, 50.3%)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표본선택오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체 분석에서 제외함

○ 가 설 1 : 그룹별(전문가, 어업인)로 유지해야할 보조금에 대한 인식도에 차이가 있다.

- 추가 검정 : 그룹별로 28개 보조금 유형별로 유지여부에 대한 인식도 차이 유무 검정

○ 가 설 2 : 그룹별(전문가, 어업인)로 불가피한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다

- 추가 검정 : 그룹별로 28개 보조금 유형별로 불가피한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인정 유무 검정

2. 분석 결과

가. 금지 및 허용보조금 상위 10위

전체그룹에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할 보조금으로 면세유공급, 영어자금, 공제로 지원, 자원조성사업, 어업용 기자재 면세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어업인과 전문가 그룹이 반드시 유지해야할 보조금에 어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보조금 항목과 어선어업의 기반안정과 발전을 위한 보조금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불가피한 경우 금지 가능 보조금으로 기타 어업협동조직 지원, 조합경영개선자금, 기타 수출지원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어업인과 전문가 그룹이 직접적인 개별 어민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그룹별 인식도 차이

분석방법은 영어자금의 예를들면, 총 221명(어업인 159명/전문가 62명)을 대상으로 향후 WTO 보조금 협상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8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2.8%에 달하였다. 그룹별 인식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피어슨의 카이제곱 값은 37.048이고 양측검정에 의한 정확한 유의



<표 5> 상위 10개 보조금(전체)

구 분	반드시 유지해야할 보조금	불가피한 경우 금지 가능 보조금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유공급</li> <li>· 영어자금</li> <li>· 공제료 지원</li> <li>· 자원조성사업</li> <li>· 어업용 기자재 면세</li> <li>· 수산재해복구비</li> <li>· 연근해어선 감척사업</li> <li>· 어장정화사업</li> <li>· 수산물 가격안정사업</li> <li>· 어항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어업협동조직 지원</li> <li>· 조합경영개선자금</li> <li>· 기타수출지원</li> <li>·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li> <li>· 수산물 수출지원</li> <li>·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li> <li>· 어촌체험마을조성</li> <li>· 직거래 판매시설</li> <li>· 어가부채경감</li> <li>· 수산물가공산업 지원</li> </ul>

<표 6> 반드시 유지해야할 그룹간 상위 10개 보조금 비교

구 분	비공통항목	공통항목
어업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료지원</li> <li>· 어업용기자재면세</li> <li>· 수산물가격안정사업</li> <li>· 어가부채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자금</li> <li>· 면세유공급</li> <li>· 수산재해복구비</li> <li>· 자원조성사업</li> <li>· 연근해어선감척사업</li> <li>· 어장정화사업</li> </ul>
전문가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건설</li> <li>· 어업인후계자지원</li> <li>· 어촌종합개발</li> <li>· 수산물유통보급시설</li> </ul>	

그룹간 공통 항목(6개), 그룹간 비공통 항목(8개 :각 4개), 총 14개 항목

<표 7> 불가피한 경우 금지 가능 그룹간 상위 10개 보조금 비교

구 분	비공통항목	공통항목
어업인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체험마을조성</li> <li>· 직거래판매시설</li> <li>· 어촌종합개발</li> <li>· 수산물 가공산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협동조직지원</li> <li>· 기타수출지원</li> <li>· 조합경영개선자금</li> <li>· 수산물수출지원</li> <li>· 연근해노후어선대체</li> <li>·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li> </ul>
전문가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가부채경감</li> <li>· 어업용기자재면세</li> <li>· 해외생산지원자금</li> <li>· 공제보험지원</li> </ul>	

그룹간 공통 항목(6개), 그룹간 비공통 항목(8개 : 각 4개), 총 14개 항목

확률 P=0.000으로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그룹별로 영어자금이 보조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그룹과 어업인 그룹, 전문가 그룹의 상위 10개 항목에 대한 그룹간 반드시 유지해야 할 보조금의 그룹간의 차이는 연근해어선감척사업과 수산재해복구비 2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총 14개

항목 중 12개의 항목에서 그룹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상위 10개 항목에 있어서 어업인 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반드시 유지해야 할 보조금의 그룹간의 차이는 연근해어선감척사업과 수산재해복구비 2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총 14개 항목 중 12개의 항목에서 그룹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반드시 유지해야 할 보조금

구 분	어업인그룹(A)		전문가그룹(B)		X <sup>2</sup> -Test	P	그룹간 차이
	응답	(%)	응답	(%)			
영어자금	147	92.5	36	58.1	37.048	0.000<0.05	있음
공제보험지급	129	81.1	30	48.4	23.696	0.000<0.05	있음
면세유공급	144	90.6	49	79.0	5.363	0.026<0.05	있음
어업용기자재면세	121	76.1	21	33.9	34.634	0.000<0.05	있음
어항건설	54	34.0	47	75.8	31.474	0.000<0.05	있음
어촌종합개발	16	10.1	32	51.6	45.294	0.000<0.05	있음
수산물유통보급시설	52	32.7	31	50.0	5.690	0.021<0.05	있음
수산물가격안정사업	81	50.9	21	33.9	5.231	0.025<0.05	있음
어가부채경감	78	49.1	14	22.6	12.868	0.000<0.05	있음
어장정화사업	80	50.3	49	79.0	15.139	0.000<0.05	있음
자원조성사업	101	63.5	56	90.3	15.574	0.000<0.05	있음
연근해어선감척사업	63	39.6	27	43.5	0.285	0.648>0.05	없음
수산재해복구비	57	35.8	22	35.5	0.003	1.000>0.05	없음
어업인후계자지원	43	27.0	34	54.8	15.179	0.000<0.05	있음

그룹간 공통 항목 : 6개, 그룹간 비공통 항목 : 8개, 총 14개 항목

<표 9> 반드시 유지해야할 상위 10개 보조금 그룹간 인식도 차이

구 분	반드시 유지해야할 보조금
그룹간 차이 존재 여부	존재함 영어자금, 공제보험지급, 면세유공급, 어업용 기자재면세, 어항건설, 어촌종합개발, 수산물유통보급시설, 수산물가격안정사업, 어가부채경감, 어장정화사업, 자원조성사업, 어업인후계자지원
	존재하지 않음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수산재해복구비

다음으로, 전체그룹과 어업인 그룹, 전문가 그룹의 상위 10개 항목에 대한 그룹간 “불가피한 경우 금지 가능 보조금”의 그룹간 차이를 보면 총 14개 항목 중, 어업용기자재면세, 조합경영개선자금, 어가부채경감, 연근해노후어선대체, 어선기관

장비개발, 공제료지원, 어촌종합개발의 7개 항목에서 그룹간 인식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 7개의 항목에서는 그룹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 시사점은 어업인 그룹은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보조금에 대해,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전문가 그룹은 무역거래 왜곡이나 자원에 부정적인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 금지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설문지 응답자들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한 허용/금지 수산보조금 리스트 결과임으로, 어촌체험마을, 직거래판매시설 등은 어항시설과 함께 사회.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며, 무역과 자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보조금임으로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존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10> 불가피한 경우 금지 가능 보조금 항목

불가피한 경우 금지 가능 보조금 항목	어업인그룹(A)		전문가그룹(B)		X <sup>2</sup> -Test	P	차이
	응답	(%)	응답	(%)			
공제료지원	26	16.4	19	30.6	5.620	0.025<0.05	있음
어업용기자재면세	35	22.0	29	46.8	13.294	0.000<0.05	있음
조합경영개선자금	65	40.9	41	66.1	11.393	0.001<0.05	있음
기타어업협동조직지원	83	52.2	23	37.1	4.077	0.052>0.05	없음
어촌종합개발	51	32.1	11	17.7	4.540	0.045<0.05	있음
어촌체험마을조성	97	61.0	46	74.2	3.397	0.084>0.05	없음
직거래판매시설	99	62.3	4.6	74.2	2.813	0.115>0.05	없음
어가부채경감	42	26.4	33	53.2	14.302	0.000<0.05	있음
수산물가공산업지원	112	70.4	43	69.4	0.025	0.871>0.05	없음
수산물수출지원	69	60.4	38	61.3	0.016	1.000>0.05	없음
기타수출지원	88	55.3	38	61.3	0.643	0.453>0.05	없음
연근해노후어선대체	52	32.7	40	64.5	18.577	0.000<0.05	있음
어선기관장비개량	46	28.9	41	66.1	25.853	0.000<0.05	있음
해외생산지원자금	24	38.7	70	44.0	0.516	0.545>0.05	없음

그룹간 공통 항목 : 6개, 그룹간 비공통 항목 : 8개, 총 14개 항목

<표 11> 불가피한 경우 금지 가능 상위 10개 보조금 그룹간 인식도 차이

구 분		불가피한 경우 금지 가능 보조금
그룹간 차이 존재여부	존재함	어업용기자재면세, 조합경영개선자금, 어가부채경감, 연근해노후어선대체, 어선기관장비개량, 공제료지원, 어촌종합개발
	존재지 않음	기타어업협동조직지원, 어촌체험마을조성, 직거래판매시설, 수산물수출지원, 기타수출지원, 수산물가공산업지원, 해외생산지원자금

#### IV. 2005년 상반기 주요 사안별 논의 및 전망

##### 1. 2005년 상반기 협상 동향

2005년 상반기('05.7월 이전)에는 제17차('05.2)에서는 3개국 제안서, 제18차('05.3) 브라질, 뉴질랜드, EC 등의 제안서가 있었으며, 제19차('05.5) 미국과 EC의 2개 제안서, 제20차('05.7)에서는 일본과 3국공동(호주, 아쿠라돌, 뉴질랜드) 등이 제안서 제출되었다. 이 중에서 브라질은 제안서(제18차)에서 광범위한 개도국의 특별대우 및 포괄적 금지방식 적용(Top-Down), 소규모어업과 전통적

어업에 대한 허용보조금 분류 및 기준제시, 금지 보조금의 유예기간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는 제19차 회의시 제안서에서 어획 능력을 감소시키는 감척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 제20차 회의에서는 일본은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관련 금지 보조금 제시, 호주, 아쿠아돌, 뉴질랜드 등은 양식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무역 왜곡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특별규율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규범협상 의장보고서('05.7.21)에서는 규범협상 의장 보고서에 의하면,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회원국간의 입장이 나뉘어 활발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무역협상위원회(TNC)의장보고서('05.7.29)에서도 같은 취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2005년 상반기 주요 쟁점 사항

### 가. 금지/허용 보조금 분류

2005년 2월 회의를 기점으로 포괄적 금지 방식에 대한 논의 사실상 중단 및 개별 보조금에 대한 논의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FFG 측에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보조금 위주의 논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포괄적 금지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한·일·대만은 금지보조금에 대하여 입장 표명함으로써 기존 입장 고수하고 있다.

2005년 7월 회의에 제출된 브라질 제안서는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 주장으로 FFG(Fish Friends Group)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도국의 입장이 결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나. 양식업 보조금

중국('02. 7월, '03. 5월)과 브라질('05. 4월, 7월) 수산보조금 특별규율 범위에 양식업을 제외 주장과 2005년 7월 회의에서 호주 등 3개국 공동제안서에서는 양식업 보조금 지급에 따른 환경, 무역 및 자원왜곡을 다루면서, 특별규율 주장 한바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양식업의 특별규율에 대

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기 회의에 동 제안서가 제차 제출될 예정이며 아이슬란드, 칠레 등 일부 FFG들의 양식업 규제 필요성 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 다. 개도국 특별대우(S&D)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별대우(S&D)에 대한 논의가 여러 제안서에서 언급되었으며, 모든 개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중국 등)과 수산선진 개도국에는 적용을 배제하자는 입장(한국)으로 대별되고 있다. 2005년 7월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개도국 특별대우(S&D)를 주장하는 브라질 제안서가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소규모 어업

소규모어업을 별도로 정의하는 실익은 허용보조금 또는 특별규율을 예외로 분류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어업을 개도국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 입장과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어업에 대해서 브라질(제18차, '05.3)이 소규모 어업에 관한 구체적 정의를 최초로 제안한바 있으며, 소규모 어업(small scale fisheries)과 전통적 어업(artisanal fisheries)을 상업적 성격 유무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브라질 제안서상의 개도국 특별대우

구 분	세 부 내 용
S&D 박스의 인정	1. 지역수산기구 회원국의 어획능력 증강 보조금 (어선건조 및 현대화) 2. 어획활동 지원을 위한 연료, 미끼, 얼음 제공 3. 입어료 4. 낙후지역보조
일정 경우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인정	1. 지역수산기구가 설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 어선에 대한 지원 2. IUU 조업 어선에 지원되는 모든 조치가능 보조금 3. 위험상태에 있는(patently at risk)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지원 4. 조업 손실(operating losses)을 보전해 주기 위한 보조금
유예기간	최빈개도국 10년, 일반개도국 5년의 유예기간 인정(일반국 3년)

마. 유예기간 설정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국이 '04년 12월(제16차 회의)에 제안한바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05년 3월(제18차 회의) 브라질 제안서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동 제안서에서 브라질은 일반 회원국에게는 3년, 일반 개도국에게 5년, 최빈 개도국에게는 10년의 유예기간 부여하는 방안과 협상 진행 기간동안 예상 금지보조금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년도 보조금액을 바탕으로 단계적 철수하는 세부적인 추진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3. 향후 협상 전망

WTO/DDA 협상 마감시한은 2006년말까지이지만 이때까지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협상 자체가 뚜렷한 가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혼선을 더하고 있어 협상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수산보조금 규제방안뿐만 아니라 향후 금지/허용보조금의 성격이나 범위, 개도국 S&D, 소규모 영세 어업의 정의, 유예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 될 것으로 예측된다.

V.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전략

1.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방향

가. 금지보조금 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향후 우리나라는 금지보조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출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협상에서 수세적인 우리나라가 2005년 2월(제17차) 제안서의 제출을 통해 얻은 시사점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인 Consensus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 응답자들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한 허용/금지 수산보조금 리스트 결과임으로, 어촌체험마을, 직거래판매시설 등은 어항시설과 함께 사회·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며, 무역과 자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보조금임으로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존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 금지예상 보조금은 점차 지양하고, 허용보조금으로 예산 구조 재편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국제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내보조금의 분류체계를 국제적 규범을 염두에 두고 국내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국내 수산보조금의 재검토 및 재편방향에 따라 각 세부항목별 정책대안을 마련이 중요하다. 즉, 금지가 예상되는 보조금은 지양하고 허용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을 빨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다. WTO가 목표로 삼고 있는 무역왜곡 및 자원남획 보조금 지양

우리나라의 입장과 현실 등만을 고려하여 자기 중심적인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지양하여야 한다. 즉,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협상의 흐름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정하고 있는 부정적인 수산보조금들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국내대책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최근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2005년 상반기 WTO/DDA 주요 5가지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지 및 허용보조금 분류 문제는 자원왜곡을 기초로 한 금지보조금에 대한 과학적 제안서의 제출로 논의 지연 및 금지 보조금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왜곡을 기초로 한 금지목록의

발굴을 위한 3국(한국, 일본, 대만)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양식업 보조금 문제는 양식업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양식업의 무역왜곡 효과만을 현행 보조금 규범에 의해 규율하고, 수산보조금 협상은 자원왜곡효과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여 양식업 특별 규율 논의 시 비용절감(Cost-reduce) 보조금으로 논의를 확대하여 사전 봉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의 특별지원(S&D) 문제는 주요 어업국들이 허용보조금으로서의 소규모 영세어업의 혜택과 동시에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S&D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영향만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적 개념인 S&D를 자원관리에 결부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일반 보조금 협정에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특별 규율 목적은 자원왜곡 억제 및 효과적 자원관리에 있으므로, 개도국 특별대우 인정시 자원왜곡 효과를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칙과 예외 설정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산선진 개도국의 개념을 직접 사용하여 개도국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은 우리나라 WTO 협상 전체 전략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산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이 너무 강조되면 유리할 것은 없음을 고려해야하고, FAO, APEC, OECD, UNEP 등 지역 및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필요성도 있다.

넷째, 소규모영세어업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양식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고, 또한 양식업은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어선어업에만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한정하여 기술적 기준안을 제시하면 5톤미만 어선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5톤 미만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소규모 영세어업이라고 판단되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어촌사회의 정주권

확보 및 어선어업의 당일발이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톤미만 어선은 2003년 12월 기준, 44,340가구 중에서 83.8%인 36,954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연근해어선 93,257척수 중에서 86%인 80,158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예기간 문제는 협상 결과의 실질적 유효성을 위해서 단계적 감축의 기준년도 설정 및 가능한 짧은 유예기간 설정 예상되나, 협상 결과에 따른 충격 완화 및 정책 신축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VI. 결 론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입장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 등이 중심이 된 이른바 FFG(Fish Friends Group) 국가들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Anti-FFG 국가들은 수산보조금이 국제 무역을 왜곡하고 수산자원과 환경을 훼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산보조금 규제가 각국의 수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을 심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2004년 11월에 열렸던 15차 회의에서 뉴질랜드를 비롯한 6개국이 수산보조금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그 다음달에 개최된 16차 회의에서 미국이 이 제안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FFG국가들이 협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FFG 국가들의 공세에 대응하여 Anti-FFG 국가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4년 9월의 14차 회의에서 일본이 보조금 분류 및 규제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3국이 2005년 2월 제17차회의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산보조금의 전면 폐지의 부당함과 동시에

수산보조금 협상의 국면전환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FFG의 뉴질랜드 주도로 2004년 11월 이후 수산보조금의 전면 폐지가 전반적인 흐름이었지만 동 제안서를 통하여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 등이 3국제안서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원만한 협상의 진행을 위하여 금지 및 허용보조금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향후, 제18차-제20차('05.3, '05.5, '05.7)의 협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수산보조금의 규제방안뿐만 아니라 금지 및 허용 보조금의 성격과 범위, 개도국의 S&D, 소규모 영세어업의 정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WTO/DDA 타결이전(2001년 11월 이전)에 국제기구에서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협상 이후(2002.1-2004.12)와 2005년도 상반기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산보조금의 금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FFG(Fish Friends Group)과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인 Anti-FFG(Anti Fish Friends Group),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특히, 금지/허용 수산보조금에 대해 어업인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문항별 빈도 분석 및 카이제곱(X<sup>2</sup>-Test) 검정을 통해 그룹간 인식도 차이의 유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전략에 대하여 협상에 임하는 접근방법과 국내적 대책 중심으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논문의 의의는 주요국의 제안서 분석과 WTO/DD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허용/금지 보조금 분류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전문가 및 어업인 그룹들이 불가피할 경우 허용 및 금지보조금으로 분석된 자료가 향후 협상 및 국내대책 강구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 문헌

- 김수진·조정희, 수산보조금 협상, 해양수산(통권 237호), 2004.6.
- 조정희,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 해양수산(통권 227호), 2003.8.
- 이광남, 수산보조금 축소 및 철폐문제 국제기구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2000.11.
- 이광남, 수산보조금 논의동향에 대한 한국의 입장, APEC 수산물 무역세미나, 2001.5.
- 이광남등,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00.12.
- 이광남등, 「WTO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협상과 수협의 대응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01.12.
- 이광남, 주요 수산국과 한국간의 수산보조금 비교 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4권제2호, 2003.12.
- 한국수산회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 11.
- 한국수산회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종합적 연구」, 2002. 11.
- 한국수산회 「수산보조금의 분류 및 WTO/DDA 협상 대응전략」, 2004.11.
- 해양수산부·KMI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 보고서('02.3-'04.12)」, 2004. 12.
- 해양수산부 「수산보조금 관련 UNEP 워그숍 및 WTO 규범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2004. 5.
- 해양수산부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제안서 및 사무국 보고서」, 2005. 6.
- 해양수산부 「2005년도 상반기 WTO/DDA 수산분야 협상 평가」, 2005. 8.

해양수산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회의 자료」, 2004.12.

해양수산부 「WTO/DDA 협상 수산분야 기본 골격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2004. 8.

KMI, 지구촌 해양·수산, 제259호, 2005.2.7.

KMI, 주요 FFG 구가의 수산보조금 특징 및 시사점, 해양수산(통권 245호), 2005.2.

### [외국문헌]

Arnason, R., Ocean fisheries management: rec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Marine Policy, september, 1993.

Bollen, Kenneth A.,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Sons, 1989.

Dye, Robert R., Understanding Public Policy, Prentice-Hall, Inc, 1981.

FAO, Report of Expert Consultation on Economic Incentives and Responsible Fisheries, FINAL DRAFT, 2000.

Flaaten, Ola and John R. Isaksen,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to the Norwegian Fishing Industry: 1977-1996, AGR/FI/RD (98)33, 1998.

Milazzo, Matteo, "Subsidies in World Fisheries",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406, Fisheries Series, 1998.

OECD Fisheries Committee, Impact on Fisheries Resourc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AGR/FI(97)11, OECD, 1997.

OECD Fisheries Committee, The Economic

Impact of Reponsible Fisheries on Production and Management: The Impact on Fisheries Resources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AGR/FI(99)3, OECD, 1999.

OECD Fisheries Committee, Transition to Responsible Fisheries: 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OECD, 2000.

UNEP Division of Technology, Industry and Economics/Economics and Trade Unit, Fisheries Subsidies and Overfishing : Toward a Structured Discussion(2001. 2.12), UNEP, 2001.

UNEP, Fisheries Subsidies and Marine Resource Management, 2004. 4.

UNEP, Policy Implementation an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2004. 4.

UNEP, Incorporating Resource Impact into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2004.10

WTO/CTE, Environmentally-Harmful and Trade-Distorting Subsidies in Fisherie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WT/CTE/W/154, 2000.

### [ 웹사이트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at.go.kr)

WTO 홈페이지(www.wto.org)

OECD 홈페이지(www.oecd.org)

FAO 홈페이지(www.fao.org)

UNEP 홈페이지(www.unep.ch/etb)

APEC 홈페이지(www.apecsec.org.sg)